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58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6호(2025.10.2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복귀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국내복귀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희면적” 정의 관련 ‘빈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사항을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으로 개선함(안 제2조)

나. 표준재무제표 제출 시 ‘별도 및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토록 하고, 타당성 평가시 하나의 기준을 적용토록 명시(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별표5)

다. 기업 투자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14조, 안 제17조)

라. 기업이 고용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2년 이내
에서 이행기간 연장 가능토록 조항 신설(안 제19조)

마. 투자수행과 관련된 조항(제17조~제21조)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
신설

바. 지역특성화 업종 현행화(안 별표 1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7일까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문의처 : 044-203-4096, FAX: 044-203-47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적용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1조까

지는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기준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하나의 기준 고시를 택하여 일관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유희면적”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u>신규·추가</u>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u>빈 공간</u> 을 말한다.	5. ----- ----- <u>추가</u> ----- ----- <u>공간</u> 으로서 <u>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u> -----.
제14조(투자보조금의 신청) ① ~ ⑦ (생 략)	제14조(투자보조금의 신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⑧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직전 사업연도</u>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4. <u>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는</u> ----- -----
5. <u>직전 사업연도</u>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5. <u>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는</u> ----- -----
⑨ 제4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필증교부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⑨ ----- ----- ----- -----

신청일) 등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시장상황, 기타 기업의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거나 추가적인 투자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이전보조금의 신청) ①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생략)

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인 기업

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17조(투자의 수행) ① (생략)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투자기간을 연장-----

제14조의2(이전보조금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는 -----

3.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는 -----

제17조(투자의 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3. 삭제

4. ~ 6의2. (생략)

③ ~ ⑥ (생략)

제19조(투자사업이행) ① (생략)

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5의2. (생략)

6. ~ 8. 삭제

<신설>

③ ~ ⑦ (생략)

-----.

1. ----- 사항(투자기간의 경우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 6의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투자사업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의2. (현행과 같음)

9. 사업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업이 고용의무 이행 목적으로 2년 이내에서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③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5]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4조제3항 관련)

①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10점)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30 % 이상	10
20 % 이상 ~ 30 % 미만	8
10 % 이상 ~ 20 % 미만	6
0 % 이상 ~ 10 % 미만	4
0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A-B)/B \times 100$

(A) 최근3년간사업실적의가중평균 = $\frac{(\text{직전1년도매출액} \times 3) + (\text{직전2년도매출액} \times 2) + (\text{직전3년도매출액} \times 1)}{6}$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해외사업장 사업 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B)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② 신청기업신용등급 (10점)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신용등급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③ 해외사업업력 (5점)

업력	평가점수
10년 이상	5
7년 이상~10년 미만	4
5년 이상~7년 미만	3
3년 이상~5년 미만	2
~3년 미만	1

④ 부채비율 (10점)

평가기준		점 수
주업종: 제조업	주업종 : 제조업 외	
30% 미만	50% 미만	10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8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6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4
120% 이상	200% 이상	2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별도 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2년간 해외사업장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⑤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5점)

평 가 척 도	점 수
10% 이상	5
7% 이상 ~ 10% 미만	4
4% 이상 ~ 7% 미만	3
1% 이상 ~ 4% 미만	2
1% 미만	1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left[\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3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6} \right]$

*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순익}}{\text{매출액}} \times 100$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별도 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2년간 해외사업장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⑥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5점)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left[\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증가율} \times 2)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증가율} \times 1)}{3} \right]$
- * 직전1년도 매출액증가율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 - \text{직전2년도 매출액}}{\text{직전2년도 매출액}} \times 100$
- * 직전2년도 매출액증가율 = $\frac{\text{직전2년도 매출액} - \text{직전3년도 매출액}}{\text{직전3년도 매출액}} \times 100$
-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별도 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확인**

7) 이자보상배율 (5점)

평 가 척 도	점 수
5 이상	5
3 이상 ~ 5 미만	4
1.5 이상 ~ 3 미만	3
1 이상 ~ 1.5 미만	2
1 미만	1

- * 이자보상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별도 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확인**
- ※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등은 직전1년도(직전1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 불가시 직전2년도) 기준
-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2년간 해외사업장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8) 신규투자금액 (25점)

신규투자금액		점수(25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		15억 원당 1점
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10억 원당 1점
기계장비 구입비용	(주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5억 원당 1점 (유희면적 내 설치되는 기계장비 투자의 경우, 4억 원당 1점)
	(주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2억 원당 1점 (유희면적 내 설치되는 기계장비 투자의 경우, 1.5억 원당 1점)

- * 총 투자금액으로 계산(건설투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은 건물신축단가표 적용)
- *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장의 축소 등이 있는 경우, 당회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으로 계산
- * 각 항목별 점수의 합계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 투자완료 후 정산시 재평가 항목임

⑨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5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15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⑩ 투자기간 (10점)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10
1년 초과 ~ 1.5년 이내	8
1.5년 초과 ~ 2년 이내	6
2년 초과 ~ 2.5년 이내	4
2.5년 초과 ~ 3년 이내	2
3년 초과	0

- * 착공신고필증 교부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 기존건물 매입·임차의 경우 매입·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 경매의 경우 잔대금납부기일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자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 투자기간 연장 승인 요청 시 및 투자완료 후 정산 시 재평가 항목임

⑪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사업재편 승인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해당 여부 : 각 2점

-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은 중복적용 불가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을 말하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투자달성률 70% 이상으로 정산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은 별도 및 연결기준 표준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고, 하나의 기준을 택하여 일관되게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항목은 별도기준 표준재무제표로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의 2]

지역특성화업종(제4조제2호 관련)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부산	특성화 지정업종 (6)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유치희망 업종 (44)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대구	특성화 지정업종 (1)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유치희망 업종 (49)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27192 치과기공물 제조업 27193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5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7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 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성화 지정업종 (12)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광주	유치희망 업종 (38) (통계청 고시 제2018-269 호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는 제외)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27212, 27213, 27214, 27216 제외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20 일차전기 및 축전기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58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전	특성화 지정업종 (7)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301 체외진단 시약 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유치희망 업종 (43)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관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기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제외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강원	특성화 지정업종 (10)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유치희망 업종 (40)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2 과일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42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43-장류-제조업 10891 커피 가공업 108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201-얼음-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2-생수-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6101-일반-재채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202-합성수지-및-가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동물용-의약품-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41-운송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311-사멘트-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290-가타-1차-비철금속-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화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70112 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울산	특성화 지정업종 (11)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유치희망	192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업종 (39)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충남	특성화 지정업종 (18)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유치희망	10121 가공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업종 (32)	1042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42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602 빵류 제조업 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제품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100 기초 의학물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21212 합성 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약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약품 및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특성화 지정업종 (7)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관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충북	유치희망 업종 (43)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513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0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0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8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8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1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전북	특성화 지정업종 (6개)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치 희망업종 (44개)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0402 식물성 유자 재조업 1042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재조업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43 장류 재조업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재조업 10701 도시락류 제조업 1070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8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재조업 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재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재조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재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재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재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재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재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가판 제조업 26295 전자 감자장치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7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마 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311 유인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남	특성화 지정업종 (1)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유치희망 업종 (49)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2 과일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경북	특성화 지정업종 (1)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유치희망 업종 (49)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펄트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경남	특성화 지정업종 (3)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유치희망 업종 (47) (통계청 고시 제2018-29 호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는 제외)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202 축전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제주	특성화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지정업종 (6)	34020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유치희망 업종 (44) (통계청 고시 제2018-299 호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는 제외)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1 유선 통신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세종	유치희망 업종 (50)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1/3 \quad 1$

국내복귀투자보조금요청서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본사 소재지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입지, 설비 ☐ 설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업종의 구분					
	☐ 일반업종 ☐ 우대업종() ☐ 첨단업종 ☐ 공급망핵심업종 ☐ 국가전략기술 ☐ 첨단전략기술					
	지역의 구분					
	☐ 수도권 ☐ 수도권인접지역 ☐ 일반지역 ☐ 지원우대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지원비율 특례사항					
	☐ 고용(00%p 또는 - 00%p) ☐ 투자(00%p) ☐ 동반복귀기업 ☐ 협력형 복귀기업 ☐ 기타()					
	투자사업장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투자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매입 ☐ 임대		☐ 신설 ☐ 증설 ☐ 기존공장 매입 ☐ 기존공장 임차 ☐ 유휴면적 내 설비투자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설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최초)기계장비 계약일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해당시)		착공신고필증교부일		투자완료일	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주 소			부지면적	
국내기존사업장	본사				㎡	
	공장1				㎡	
	공장2				㎡	
	연구소				㎡	
투자사업장				(실투자)	㎡(실투자)	
				(보조금)	㎡(보조금)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 보유 ☐ 없음		건설업명	00설비공사업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국내복귀 관련 해외사업장						
국내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당회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D+E)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천원		천원		건설투자비 (C)	기계장비구입비 (D)
					천원	
				천원	천원	

당회 보조금 대상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D+E)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건설투자비 (C)	기계장비구입비 (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당회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A=B+C)	국비 신청액 (B)	지자체 분담금(C)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입지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설비 천원	
	보조금 산출식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당회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국내·외 기존사업장 재배치 인원	신규 상시고용인원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기지원사항	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년도) ☐ 기타 보조금()			총액	천원
				국비	천원
해외사업장 현황	기업명	해외진출국가		등록번호	
	실질적 지배자	투자지분율	사업개시일	청산·양도 또는 축소 완료(예정)일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방안	☐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4. 건축물대장 5. 착공신고필증 6. 토지(임야)대장 7. 사업자등록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별도 및 연결기준)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